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0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6.

발 의 자 : 조은희 · 이성권 · 고동진
서명옥 · 이만희 · 배현진
김재섭 · 박수민 · 신성범
서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,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(이하 “개발계획수립자”)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고, 1천세대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함.

그러나 세대당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시 개발계획수립자에게 작은 평형대의 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유인이 생겨 수도권 등지의 주택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 또한, 정비계획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게 되어 이에 대한 관리비 등 추가적인

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·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(안 제 68조제4항).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5호의2의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내 정비구역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·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1. ~ 6. (생략)	<u>2제곱미터 이하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범위로 한다.</u> 1. ~ 6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	--